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』

제 안설명자료



2020. 5. 25.

서울특별시교육청

안녕하십니까?

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.

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·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

- 국내 경제의 호경기와 불경기가 반복되면서 경기에 민감한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상 호경기에는 세입이 증가하고 불경기 에는 세입이 감소되어 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이 발생하나,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인해 연도 간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곤란한 구조입니다.
- 따라서,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그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적립한 기금을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관련 법규는

○ "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,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."고 규정하고 있는 「지방재정법」제14조제1항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있습니다.

□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

- 첫번째, 기금의 조성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게 전입금과 기금 운용 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였습니다.
- 두번째, 기금의 적립요건 및 비율은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세입재원이 증가한 경우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으로 하였습니다.
- 세번째, 기금의 사용한도는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%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그 사용용도는 ①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의 보전, ②대규모 재난 ·재해 대응 및 예방, ③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 지급금(BTL) 충당, ④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, ⑤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에 지출하도록 하였습니다.
- 네번째,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위원회는 교육감이 수립·작성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, 기금운용의 성과·분석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.
- □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